

1. 개정이유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실험동물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허가 절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의2)
- 나.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주기, 세부적인 방법을 마련(안 제7조의3, 별표3의3)
- 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 실험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별표 8)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2.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선형 무늬를 적용한 자재: 무늬 상하간격이 5cm 이내이거나 좌우간격이 10cm 이내이어야 하며, 무늬의 굵기는 가로는 3mm 이상, 세로

는 6mm 이상인 자재

2. 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적용한 자재: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면서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² 이내이어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내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내인 자재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탈출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이 가능한 시설

2. 횡단이동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1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13.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14.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명승 및 제27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1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실험동물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

1. 조사 항목

- 가. 야생동물 충돌 실태조사 항목은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 또는 사체(뼈, 깃털 등 포함), 인공구조물 상 충돌흔적, 위험요인으로 한다.
- 나. 야생동물 추락 실태조사는 추락에 따른 흔적(개체, 사체, 발자국, 털, 뼈, 가죽, 허물 등)과 위험요인을 조사항목으로 한다.

2. 조사 방법

- 가. 조사대상지역 내의 구조물 혹은 지점을 선정하고 피해 동물의 종류에 따라 충돌·추락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 나.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내부 또는 주위를 탐색하여 조사 항목을 확인한다.
- 다. 도보 및 육안 탐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안경, 망원카메라,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활용한다.
- 라. 최소 2인 1조로 조사한다.
- 마. 조사원은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로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에 조사대상 인공구조물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 바. 조사원은 충돌·추락으로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 또는 흔적 및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를 활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기록한다.
- 사. 사진 촬영 시 사진을 이용하여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 아. 관리/미화 담당 관리자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경우, 관리자에게 조사 당일 피해 기록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기록한다.
- 자. 중복 기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시 확인한 야생동물 사체 또는 그 일부를 현장에서 제거 또는 관리기관에 신고한다.

3. 조사 결과 관리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1) 조사자 정보
- 2) 일시
- 3) 인공구조물 정보
- 4) 조사 항목 정보(식별 가능한 야생동물 및 그 일부의 종명과 개체수도 기록)

한다.)

5) 위치 정보

6) 그 밖에 필요한 정보

4. 조사 결과 확인

조사원이 기록한 정보 중 적합하다고 확인된 정보만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공공기관등 협조

현장 조사시 관계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2) 공공기관등에서 야생동물 충돌·추락 최소화를 위해 관리하는 현황(저감조치 현황) 정보

3) 구조물의 형태, 위험요소 등 건축물 관련 자료

4) 관리/미화 담당 인원의 탐문조사

5) 그 밖에 필요한 조사 관련 자료

6. 안전수칙

가. 조사원이 보행자 도로가 아닌 도로에 노출되는 경우 경찰 등의 협조를 구한 후 안전하게 조사한다.

나. 조사원은 조사시 안전조끼,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조사원은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라텍스 장갑, 집게 등을 활용하여 동물 및 사체를 수거하며, 직접 만지지 않는다.

7. 기타

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은 동 방법에 준하여 하거나,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u> <u>2.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u> <u>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u>

설치하여야 한다.

1. 선형 무늬를 적용한 자재: 무늬 상하간격이 5cm 이내이거나 좌우간격이 10cm 이내이어야 하며, 무늬의 굵기는 가로는 3mm 이상, 세로는 6mm 이상인 자재

2. 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적용한 자재: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면서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² 이내이어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내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내인 자재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탈출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이 가능한 시설

2. 횡단이동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

<신 설>

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로: 야생동물이 인공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
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
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
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
해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
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
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설
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우선적
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
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
른 자연공원
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
른 습지보호지역
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
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
조에 따른 특정도서
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
수원보호구역
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1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13.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14.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명승 및 제27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1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

	· <u>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u>
--	---